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규정

2013.9.30. 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학칙 제24조에 의하여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체위탁 교육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**(구성) 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및 산업체위탁교육 운영학과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, 외부위원이 1/2이상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.
- 제3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장은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및 조치 등을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- 제4조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경우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개설학과에 관한 사항
 - 2. 위탁의뢰 산업체 적부에 관한 건
 - 3. 위탁생의 선발기준
 - 4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 - 5. 위탁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6.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
 - 7. 학교와 산업체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
- **제6조**(회의소집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제7조(의결정족수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